

대신대학교 강의평가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강의평가의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, 이를 통해 교수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항목) 평가항목은 기초평가, 강의내용 및 진행, 종합평가의 세 분야로 나뉘며, 전체 12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은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 교과목은 매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

제4조(평가주기) 평가주기는 매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평가점수) ① 평가항목별 A는 5점, B는 4점, C는 3점, D는 2점, E는 1점으로 하여 얻은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.

② 강의평가를 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평가점수 산출시 제외한다.

제6조(평가절차) ① 매학기 말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.

② 평가결과는 해당과목의 학과장 및 피평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시는 열람할 수도 있다.

제7조(결과활용) ① 강의평가 설문항목 12항의 평가결과를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시간강사는 환산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토록 한다.

② 평가결과를 근거로 수강생의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평가업무에 참여한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